

광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가단504529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구길선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관련 도급계약

○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구미시 D 및 E 임야 합계 186,383㎡ 중 일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0. 4.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까지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 C는 2016. 10. 18. 태양광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발전소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의 개시일	2016년 10월 18일
3. 준공년월일	2017년 05월 31일
5. 계약금액	계약금액 : 육십억육백만원, (6,006,000,000원 - 부가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부가세 포함)	■ 계 약 금 : 삼억육천삼백만원, (363,000,000원 - 부가세 포함)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 입금, 발전사업 허가 전) ■ 중도금(1차) : 이십억사천육백만원, (2,046,000,000원 - 부가세 포함) (개발행위 완료, PF 대출기표일후 7영업일 이내) ■ 중도금(2차) : 이십일억사천오백만원, (2,145,000,000원 - 부가세 포함) (모듈, 인버터 현장 입고 후 3일 이내) ■ 잔 금 : 일십사억오천이백만원, (1,452,000,000원 - 부가세 포함) (사용전 검사 후 7일 이내)
9. 기타사항	■ 설비는 30m/s 이상의 풍압에 견디는 구조로 고정형 구조물 기준 ■ 을(피고)의 사업범위 :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관련 업무 전체 - 발전사업허가, 계통확보, 개발행위 및 인허가 일체 - 태양광 발전시공 - 토목일체 (피해방지시설 및 산지복구포함) - 지자체 서류작업 - 한국에너지공단 REC관련 등록작업

계약일반조건

제3조(도급자의 범위 및 책임)

① “도급자”(원고)는 “발주자”(C)로부터 수급한 “본 공사”를 책임준공하여야 한다.

책임준공이란 “발주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하는 것과 “발주자”가 진행하는 대관 인, 허가 일체를 승인받아 제관청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단,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의 용역 범위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부지확보 및 민원해결,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 계통확보, 해당부지 토목공사, 태양광 시공 등 발전사업과 관련된 전체 업무를 말한다.

④ “도급자”는 전기사업 허가, 계통연계 및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해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도급자”는 계약 기간 중,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본 계약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기 지급받은 대금을 “발주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체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⑧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급자”는 발전사업허가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공사 내역서 및 토목 및 설계 도서를 “발주자”에게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

“도급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한다.

제18조(계약 해제 및 해지)

③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5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개선할 것을 최고하고, 기간 내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기타 다른 조항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C는 2016.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3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하도급계약

○ 원고는 2016. 10. 18. ‘G’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용역(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질조사 등)을 도급하면서, 용역기간 전기사업1) 획득 후 3개월, 계약금액은 250,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30%는 계약시, 50%는 개발행위 접수시, 20%는 준공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6. 10. 28. 피고에게 계약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계약 이후의 사정

○ 원고는 2016. 12. 19. 구미시청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2017. 4. 7. 주식회사 H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을 수령하였다.

○ 그러나 C와 F 사이에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그 후속공정(설계 및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관련 소송 경과

○ C는 피고를 상대로, 진입도로 확보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의 의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344). 위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C로부터 다.항 기재 허가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C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또한 C는 F 등을 상대로, 진입도로 개설문제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1093)). 위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여 “F는 C에게 6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가 개설·준공되어야 함에도,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진입도로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이유로 C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가 인정된 점, C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르더라도 진입도로 개설은 실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F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해림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불능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